

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질의·답변

1 의료기관

연번	질 의	답 변																			
1	2022.7.11.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?	<p>○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 등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</p> <p>○ 또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) 및 MX999(기타내역)의 별도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음</p> <p>-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(기타내역)은 기존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동일하게 작성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명세서 작성 변경사항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 <th colspan="2" rowspan="2">명세서 작성구분</th> <th colspan="2">코로나19 격리 통지</th> </tr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 <th>~22.7.10.까지</th> <th>'22.7.11.이후~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명세서 내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코로나19 외래 진료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명세서 분리작성 (코로나19 국고지원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명세서 통합작성* (코로나19 국고지원 종료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특정내역 구분코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①MT04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3/02" 기재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미기재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②MX999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H/재택치료" 등 기재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③JX999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H/전화상담처방" 등 기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H/전화상담처방" 등 기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응급실 명세서 동일 적용</p> <p>※ 명세서 통합작성 예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 ②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확진 당일 외래 진료비(진찰료 등)와 코로나19 증상 관련 경구약제비(원외처방전 1매로 통합) ③ 재택치료 진료내역과 외래 대면진료 내역 ④ 재택치료 또는 대면진료 당일에 입원하는 경우 	명세서 작성구분		코로나19 격리 통지		~22.7.10.까지	'22.7.11.이후~	명세서 내역	코로나19 외래 진료비	명세서 분리작성 (코로나19 국고지원)	명세서 통합작성* (코로나19 국고지원 종료)	특정내역 구분코드	①MT043	"3/02" 기재	미기재	②MX999	"H/재택치료" 등 기재	③JX999	"H/전화상담처방" 등 기재	"H/전화상담처방" 등 기재
명세서 작성구분		코로나19 격리 통지																			
		~22.7.10.까지	'22.7.11.이후~																		
명세서 내역	코로나19 외래 진료비	명세서 분리작성 (코로나19 국고지원)	명세서 통합작성* (코로나19 국고지원 종료)																		
특정내역 구분코드	①MT043	"3/02" 기재	미기재																		
	②MX999	"H/재택치료" 등 기재																			
	③JX999	"H/전화상담처방" 등 기재	"H/전화상담처방" 등 기재																		

연번	질 의	답 변				
2	2022.7.11.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처방전 기재 관련 변경사항은?	<p>○ 처방전의 '조제 시 참고사항'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함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51 398 1423 577"> <tr> <td data-bbox="651 398 826 472">처방전</td> <td data-bbox="826 398 1423 472">코로나19 환자 본인부담금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651 472 826 577">'조제 시 참고사항'란</td> <td data-bbox="826 472 1423 577">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 (예: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...)</td> </tr> </table>	처방전	코로나19 환자 본인부담금	'조제 시 참고사항'란	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 (예: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...)
처방전	코로나19 환자 본인부담금					
'조제 시 참고사항'란	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 (예: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...)					
3	2022.7.11.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된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(조제)한 경우 처방전 발행은?	<p>○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함</p> <p>- 이 경우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처방전의 '조제 시 참고사항'란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행함 (예: 코로나19 코로나19확진 ... 등)</p>				
4	2022.7.11.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코로나19 경구치료제(팍스로비드 등)를 원내 조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?	<p>○ 코로나19 경구치료제(팍스로비드 등) 원내 투약·조제 시 국고 미지원 명세서(특정내역 MT043 미기재)로 작성·청구함</p> <p>- 이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등 기재사항은 기존의 "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"(보험급여과-232호 2022.1.12.)을 따름</p>				
5 (의료 급여)	2022.7.11.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투석치료 받은 당일에 기저질환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를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?	<p>○ 혈액투석 정액명세서 외 별도의 명세서(타 진료내역 명세서)의 '상해외인'란에 "M"을 기재하여 청구함</p>				

2 약국

연번	질 의	답 변
6	<p>2022.7.11.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 관련 처방전의 '조제 시 참고사항'란의 기재내용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?</p>	<p>○ '조제 시 참고사항'란에 "H/재택치료"가 기재되지 않고 코로나19 관련임을 알 수 있는 경우("코로나 19" "코로나19확진" 등 기재) - 환자 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 명세서로 작성·청구함 (특정내역 MT043 미기재)</p>
7	<p>약국에서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 또는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사항은?</p>	<p>○ 기존의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 및 코로나19 대면 투약관리료의 청구방법 안내에 따른 특정내역구분 코드 MX999(기타내역)란의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작성· 청구함</p> <p>-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 산정 시 · 특정내역 MX999(기타내역): "코로나19확진" 기재</p> <p>-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· 특정내역 MX999(기타내역): "코로나19대면" 기재</p> <p>※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 또는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임</p>